

이해충돌방지법·제도 바로알기

공직자의 이해충돌과 방지제도 Q&A

이해충돌방지법이란,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,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.

Q 이해충돌이란 무엇인가요?

공직자가 직무 수행 시 **자신의 사적 이해관계**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.

예) 공공기관장이 친척에게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, 장관이 자녀를 특별채용하는 경우

Q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?

공무원, **공직유관단체** 및 **공공기관의 임직원**, **국공립학교 교직원** 등이 적용대상입니다.

Q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?

5가지 신고·제출 의무와 **5가지 제한·금지행위**에 대한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.

5가지 신고·제출 의무

-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·기피 신청
위반시 징계 및 2천만원 이하 과태료
-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·매수 신고
위반시 징계 및 2천만원 이하 과태료
- ③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
위반시 징계 및 2천만원 이하 과태료
- ④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
위반시 징계 및 1천만원 이하 과태료
- ⑤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 제출
위반시 징계 및 1천만원 이하 과태료

5가지 제한·금지 행위

- ①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
위반시 징계 및 2천만원 이하 과태료
- ② 가족채용 제한
위반시 징계 및 3천만원 이하 과태료
- ③ 수의계약 체결 제한
위반시 징계 및 3천만원 이하 과태료
- ④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·수익 금지
위반시 징계 및 2천만원 이하 과태료
- ⑤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
위반시 3~7년 이하 징역, 3~7천만원 이하 과태료

Q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대학 자체 규정은 있나요?

인천대학교 임원 및 교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을 운영하고 있으며, 최근 개정된 국민권익위원회 표준안에 의거 개정된 내용에 대해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.

대학구성원의 관심과 참여가 공정하고 청렴한 인천대학교를 만듭니다.

